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93 발의연월일: 2024. 10. 21.

발 의 자:민형배·김문수·이개호

안도걸 · 소병훈 · 주철현

이성윤 • 박홍배 • 정동영

윤준병·김용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·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. 기준 강화로 판·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.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,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,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.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.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,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.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.

만약 권력을 오·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. 큰 힘에 걸맞게,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.

이에,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・검사는 선고일부터

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. 아울러 판·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(안 제5조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판·검사로서 탄핵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판·검사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변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	제5조(변호사의 결격사유)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11.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판ㆍ		
	검사로서 탄핵 결정 선고가		
	있은 날부터 판·검사 재직기		
	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아니		
	<u>한 자</u>		